

2005

2005년 달라진 제도와 제출서류 확인하시어 효과적인 연말정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 1. 연말정산 개념 및 흐름도
- 2. 2005년 달라진 점
- 3. 연말정산 대상자별 유의사항
 - 1) 중도퇴직자의 경우
 - 2)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 4. 연말정산 공제내용 및 첨부서류

1)

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

나. 연말정산 의무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음.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 급여지급액·비과세소득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 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액 미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다.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의무자는 월별납부 및 반기별납부 여부에 불구하고 2006년 1월분 급여 지급시 2005년도의 연간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즉, 모든 연말정산의무자는 늦어도 1월말까지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라. 신고・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

연말정산의무자중 월별납부자는 2006.1.31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006.2.10 신고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란에 기재하여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연말정산세액을 납부(조정환급)**

□ '조정환급」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C	기 있어 납세의무자
(소득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였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하여 납부할	다른 세액에서 직
접 환급하여 주고 나머지 세액만 납부하	는 것을 말함		

2)

총급여악	백(급여총액+상여총액+인정상여)	총급여액=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_	근로소득공제	
근로소	득금액	
_	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기	l-족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누	·녀자,6세 이하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1~2인
_	연금보험료공제	
_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 주택자금 공제
	✓ 의료비공제	✓ 기부금특별공제
	✓ 교육비공제	✔ 혼인장례이사 공제
	✔ 장애인특수교육비	✔ 표준공제와 비교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
	✔ 연금저축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외국인근로자의 교육비등 소득공제
과세표준	<u> </u>	
X	기본세율	
산출세악	H	
_	세액공제 및 감면	
	✔ 근로소득세액	
	✓ 납세조합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	
	✓ 외국납부세액	
	✔ 세액감면	
결정세악	H	
_	기납부세액	
납부 또	는 환급세액	

표시항목: 2005년 개정내용이 적용되는 항목

항 목	종 전	개 정
소득세율인하	 ➢ 종합·퇴직소득 세율(누진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9% - 4천만원 이하 : 18%(90만원) - 8천만원 이하 : 27%(450만원) - 8천만원 초과 : 36%(1,170만원) ➢ 일용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 : 8% 	 ➢ 종합·퇴직소득 세율(누진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이하 :17%(90만원) - 8천만원 이하 :26%(450만원) - 8천만원 초과 : 35%(1,170만원) ➢ 일용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 : 8%
표준공제 및 장애인공제 확대	 ➤ 근로소득 표준공제 -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 없는 표준공제 중 선택가능 ●실액공제 :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12종) ● 표준공제 : 60만원 ➤ 장애인 공제금액 	➤ 근로소득 표준공제 - 표준공제액 · 장애인공제액 상향조정 → 100만원(근로소득자만 해당) •사업소득자는종전과동일(60만원)
	- 1인당 100만원	→ 1인당 200만원
물류사업장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비과세	 ▶ 비과세 적용 요건 급여요건 :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비과세 범위 : 연 240만원 한도 근로자 범위 : 공장 · 광산 · 어업 · 운전관련 근로자 	 ▶ 근로자 범위 확대 -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
교육비공제 대상확대	 교육비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를 위해 지급한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등 	➤ 공제대상 확대 -근로자의자기부담 직업능력개발훈련 * 교육기관은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한정 →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기준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액의 10%초과 	- 최저사용금액 기준변경: 총급여액의 15%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적용 제외 보험료, 교육비, 세금, 수도 등 공과금, 아파트 관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 등록세가 부과대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출판권등
처분된 상여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 매월 납부자 : 소득금액 변동통지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반기 납부자 : 소득금액 변동통지 받은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 	 처분된 상여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변경 매월 납부자 및 반기 납부자 :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항 목	종 전	개 정
지급조서 등에 '부양가족 공제자 명세'란 신설		 ▶ 부양가족 공제자 명세란 신설 - 기재대상 ■기본공제를적용받은 부양가족 (본인제외)
	<신설>	●기본공제 없이 특별공제·기타공제 등을 적용 받은 부양가족 - 기재항목 ●소득자와의 관계, 부양가족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공제대상자별로 해당 공제항목에 "○"표기 - 적용대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24호(1)] ●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27호(3)] ●소득공제신고서 [별지 제37호] ● 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별지 제23호(3)] ■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 기부금 모집단체의 기부금 영수증
및 보관의무 신설	<신설>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 신설 - 발급대장 기재사항 - 기부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 기부금액, 기부일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금융기관의 연말정산 관련 서류 보관 · 제출의무 신설	<신설>	 ▶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연말정산 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의무 신설 - 연말정산 관련 자료 발급내역 기재사항 •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액 •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상환한금액
지급조서 제출시기 보완	➤ 지급조서 제출시기 - 원칙 :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 근로(상여처분 제외) · 퇴직소득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조서 제출토록 보완
퇴직소득세액공제 폐지	▶ 퇴직소득 산출세약의 25% - 공제한도 : 근속연수 x 12만원	<삭제>
퇴직연금 소득공제 신설	▶ 연금저축 공제한도- 연 240만원	 연금저축 공제한도 - '05년 : 연 240만원 - '06년 : 퇴직연금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3000원

항 목	종 전	개 정
	<신설>	 ▶ 퇴직연금 소득공제 신설 - '05. 12월 이후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공제한도 : 연금저축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3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비납부내역 조회 및 출력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군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영수증 	 ▶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 추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한 『의료비 부담내역서』도 증빙서류로 인정 - 단, 각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별로 공단자료와 요양기관 영수증 중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지급조서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신설>	➤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신설 - 제도개요 HTS(Home Tax Service)를 통해 지급조서 제출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및 세무사(세무법인 포함)는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함 - 세액공제 금액 ■ 지급조서 1건당 : 1만원 ■ 공제 최저금액 : 1만원 ■ 공제한도 : 연 100만원 (세무법인은사원수1명당100만원) ■이자소득·배당소득지급조서 제외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총급여액 10%)X 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 기명식선불카드 · 직불카드 사용액 및 학원비지로납부금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15%) X 20% - 한도:500만원과 총금여액의 20% 중 적은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범위 확대 - 현금영수등 사용금액 추가 - 2005. 1. 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1)

- 가. 연도 중에 재취직한 근로자
- ① 전근무지 퇴직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
- ②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나. 퇴직자가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①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각종 소득공제액을 추가로 공제 가능

2)

- 가. 주된 근무지 이외의 근무지(종된 근무지)에서 교부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부를 연말정산기간 내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나. 근무지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중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3)

[배우자의 소득구분으로 알아본 배우자공제 유의사항]

	구 분	배우자 공제	참고사항
근로	연봉 700만원이하	공제 가능,	배우자명의 보장성보험료,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공제 가능
소득자	연봉 700만원초과	공제 불가	배우자명의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안됨
자영업자		공제 불가	배우자명의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안됨
일용직근로자		공제 가능	배우자명의 보장성보험료,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공제 가능

소득금액 100만원의 공제 개념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 요건 중 소득금액의 개념은 연봉 또는 수익금액이 아니고 근로소득 공제(근로자) 또는 필요경비(사업자)를 차감한 개념이므로 주의해야 함.

근로소득금액 계산 산식 = (연봉-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봉이 **7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 가능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일 일당**8**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배우자공제 가 가능

가. 배우자가 근로자이고 연봉이 700만원을 초과할 때 유의사항

자녀양육비 공제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모든 근로자는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교육비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음.
-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한 배우자 쪽을 선택하여 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을 본인만 공제가능 함.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배우자 양쪽 모두 공제 안됨.
- 종신보험을 남편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통 연100만원 한도를 초과하므로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의료비 공제

■ 의료비공제는 최저한도가 있어 의료비를 적게 지출하였다면 연봉이 적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기부금 공제

■ 지정기부금은 공제되는 최고한도가 있으므로 기부금 공제한도를 미리 계산하여 한도초과 기부 금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

나. 배우자가가 사업자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할 때 유의사항

사업자가 공제되지 않는 공제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인 배우자가 공제

보험료 공제

■ 자동차보험은 근로자인 배우자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신용카드 공제

■ 사업자인 배우자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배우자 쪽 카드 사용이 유리

	구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첨부서류
근로소득공제	I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1500만원이하 15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30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 4500만원 초과 	 총급여액의 전액 500만원+500만원초과액의 50% 1000만원+1500만원초과액의 15% 1225만원+3000만원초과금액의 10% 1,375만원+45백만원초과액의 5% 	 소득공제신청서 (모든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하여야 함)
	기본공제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직계비속(85.1.1이후 출생자) 직계존속남자(45.12.31 이전출생) 직계존속여자(50.12.31 이전출생) 	➤ 1인당 100만원 - 1년동안 소득금액이 1백만원 초과인 배우자(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동사무소에서 발급)
인적공제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 경로우대자(36.12.31이전출생자)	 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1인당 50만원 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원 (자녀양육비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장애인수첩사본,장애인증명서 사본 상이증명서 (의료기관<한의원 포함>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	1인인 경우 100만원2인인 경우 50만원	
연금보험료공	당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당금 제외)	▶ 당해년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등의 전액(소급분 납부보험료는 제외)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전액▶ 100만원 한도▶ 100만원 한도	 ▶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영수증 ▶ 제출 다음연도부터는 자동이체 통장 사본으로 가능 (보험회사 및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 발급)
	의료비공제	 연 급여액의 3%초과 의료비 장애인, 경로우대자 의료비 	▶ 500만원 한도▶ 한도초과 되더라도 공제▶ 본인의료도 공제한도 제한 없음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한 영수증 제출(의료기관, 약국 또는 장애인 보장구 판매처에서 발급)

	구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첨부서류
	교육비공제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본인) 장애인특수교육비 	 ▶ 1인당 200만원 한도 ▶ 1인당 200만원 한도 ▶ 1인당 700만원 한도 ▶ 전액 ▶ 제한 없음 	 ▶ 교육비납입증명서(납입영수증) ▶ 미취학아동:유치원, 보육시설, 학원(1일3시간 주5일이상) -유치원 납부증명서 -보육원 납입증명서 -학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 초,중,고,대학생:입학금, 등록금, 공과금 중 납입영수증(학교장,학원장이 발급)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 	 ▶ 당해연도 불입액의 40%()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 당해연도 지급한 이자상환금액() *공제한도 1000만원(+ + 의 공제한도 300만원) 	제출전 1월이내에 발급된
	기부금	 국가,무료・실비의사회복지시설 조특법 제73조에 규정된 특정단체 문화, 예술, 종교, 교육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 전액▶ 소특금액의 50%한도▶ 소특금액의 10% 한도	➤ 기부금납입 증명서 (기부금을 접수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
	훈인, 장례, 이사비용공제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단,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금액: 각 사유당 연100만원	 결혼: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이사: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장례: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개인연금 저축공제 연금저축 공제	▶ 본인명의 2000.12.31 이전 가입분 불입액의 40% ▶ 본인명의 2001.1.1이후 가입분 불입액	▶ 연간 72만원 한도▶ 연간 240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원본 (건축취급기관에서 발금)
기타소득공	투자조합출자 (투자)공제		소득금액의 70%한도소득금액의 50%한도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 ➤ 출자(투자)확인서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중소기업청 또는 투자조합관리자에서 확인서 발급)
Л	신용카드공제	 ▶ 2004.12.1-2005.11.30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15% 초과시 초과금액의 20% 공제 ▶ 학원수강료 지로납부 분 합산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 한도	 ▶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인터넷 발급분 가능) ▶ 학원수강료지롼부확인서 또는 지로영수증
	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공제	➤ 2002.1.1이후 가입분 불입액의 40%	➤ 공제한도: 당해연도의 출연금과 400만원중 적은금액	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액확인서
세액공제	근로소득	 ▶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55% - 50만원초과분:25만5천원+50만원초과 금액의 30% 	▶ 산출세액 1,250,000원 이상은 50만원 공제	

구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첨부서류
주택자금이자	 95.11.1~97.12.31중 미분양주택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을근납세조합공 제	➢ 을종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가입자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공제	매월분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치자금기부 금세액공제	➤ 정당(후원회 등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2004년 3월 12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 정치자금 영수증 - 무정액영수증 - 정액영수증
외국납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 산출세액x국외근로소득액/근로소 득금액	외국납부 세액공제 신청서(근로자 본인이 작성)

전년도부터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 당초 장애인공제 적용 시 장애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증명서